

기혼자녀의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및 상호지원

*Contact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Parents living apart from their Children*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고는 기혼자녀와 비동거부모 간의 접촉 방법 및 빈도, 금전적 및 물질적 지원 실태, 서비스의 상호 지원 실태 등을 살펴보고, 특히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 모두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고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혼자녀들은 부모가구와 떨어져 살지만 강한 가족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서구사회와 달리 '기혼자녀 → 부모'로의 상향식 금전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세대의 조기퇴직과 노후 경제적 불안정(빈곤)에 기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기혼자녀가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은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봉양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분은 부인부모인 경향이 여전히 강하지만 점차 양성평등적 가족문화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간병, 집안일,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가족을 위한 강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유인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국사회의 세대 간 지원은 주로 부모에 대한 기혼자녀의 경제적 지원, 즉 상향식 금전 이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양상은 '노부모 봉양'이 전통적 문화의 일부로 여겨져 왔을 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부모가 기혼자녀를 지원하는 서구의 양상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6년 63.4%에서 2008년 40.7%, 2010년 36%로 감소

하였고, 가족과 국가가 함께 부양해야한다고 보는 견해는 2006년 26.4%에서 2008년 43.6%, 2010년 47.4%로 증가하였다. 부모 생활비의 주 제공자로는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는 경우로 나뉘었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가구주의 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실시된 '한국인이 생각하는 2030년 가족의 미래'¹⁾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5.9%가 2030년에는 복지제도가 발달해 '부양부담 없는 부모자녀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혼자녀와 그들 부모와의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 ‘부양-의존 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과 자녀의 지연된 독립시기로 인해 부모-자녀 세대 간 지원의 유형 및 정도와 지원 방향이 과거와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지원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혼자녀와 비동거부모 간의 접촉 방법 및 빈도, 금전적 및 물질적 지원 실태, 서비스의 상호 지원 실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 모두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의 관계도 함께 논의코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5~8월 기간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지역특성(7대 시도, 기타 시, 읍면 지역)에 따라 3개 층으로 분류하여 모집단을 층화하고, 이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조사구당 50가구를 조사 완료함을 전제로 총 표본조사구는 360개, 표본가구수는 18,000가구이었다.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가구주가 15~64세인 경우는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14,970가구가 조사완료되었고, 본 분석에 활용된 가구는 비동거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가 살아계신 경우이다.

2. 선행연구

가족지원 또는 세대 간 지원에 관한 국내연구의 대다수가 기혼자녀의 노부모 봉양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 성장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이, 결혼 후에는 기혼자녀의 노부모 봉양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 부양관이었기 때문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혼자녀의 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양동기 및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였다.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감 동기가,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친밀감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²⁾ 또한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라 부모부양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집단에서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및 정서적 부양과 서비스 제공이 많았다.³⁾ 여성의 경제력이 양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대한 부인의 기여율이 클수록 남편 부모에게만 지원하는 비율은 낮아진 동시에 부인부모에게만 지원하는 비율은 높았다.⁴⁾

최근에는 가족 내의 세대 간 지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세대 간 지원의 양 방향성, 즉 호혜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1)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된 조사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 연구(2011~2014)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500명이었음.

2) 김윤정·최유호(2007). 성인자녀의 부모부양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pp.313~334.

3) 김명자·손서희(2005).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3(7), pp.37~51.

4) 윤원아(2010). 배우자간 의사결정력에 따른 노부모로의 시간자원 이전, 대한가정학회지, 48(4), pp.83~102.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와의 비동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 자원의 하향이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이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질수록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⁵⁾ 또한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에 의하면, 세대 간 접촉에 있어서는 부인부모에 비해 남편부모와 보다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모두에서 부인부모보다 남편부모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수혜는 남편부모나 부인부모가 비슷한 반면, 도구적 지원의 수혜는 부인부모로부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기혼자녀의 부모와의 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지원은 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체적 지원, 재정적 지원의 순이었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지원은 신체적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의 순이었다. 건강, 경제력, 자녀 수 등과 같은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접촉빈도나 동거여부 등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도 세대 간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⁷⁾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 보고서⁸⁾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실태를 보여준

다.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은 ‘일년에 서너번’이 가장 많았고, 전화, 편지, email 등을 통한 연락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부모가 비동거자녀로부터 금전 또는 비금전 지원을 받은 경우는 62.3%이었고,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지원유형은 비정기적 금전 지원, 정기적 비금전 지원, 정기적 금전 지원의 순으로 많았다. 비동거자녀로부터 제공받은 비금전 지원은 외식 및 음식물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부모가 비동거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21.0%이었고, 제공하지 않은 비율은 79.0%로 부모의 수혜율이 제공률보다 훨씬 높았다. 부모가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지원은 비금전 지원, 비정기적 금전 지원, 정기적 금전 지원 순이었다. 부모가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비금전 지원은 외식 및 음식물 지원이 가장 많았다.

3. 분석결과

1) 비동거부모와의 접촉빈도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본인 및 배우자가 비동거부모와의 대면접촉인 ‘만남’과 비대면접촉인 ‘전화, 편지, 이메일 등에 의한 접촉’을 어느 정도 하고

5) 강유경·박승희(2011).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이 세대 간 자원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1), pp.133~154.
 6) 한경혜·김상욱(2010). 세대 간 자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회학, 44(4), pp.1~31.
 7) 정병은(2007). 세대간 자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pp.503~518.
 8) ‘신종각 외.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은 전국단위 규모로 설계된 패널 조사로 45세 이상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접촉빈도는 9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 한달에 두번 정도, ⑤ 한달에 한번 정도, ⑥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 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 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 거의 볼 수 없음 또는 만나지 않음 등이다.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부모와의 만남 빈도는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즉,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와의 만남빈도의 비율은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각각 20.6%, 19.6%로 가장 높았다. 또한 남편부모와는 20.8%가, 부인부모와는 20.0%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나고 있었다(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합한 비율). 이와는 달리 남편부모와는 20.4%, 부인부모와는 27.5%가 일년에 서너번 이하의 만남만을 하고 있었다(일년에 서너번, 한두번, 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을 합한 비율).

비동거부모와의 비대면 접촉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즉, 남편부모와 부

인부모와의 만남빈도의 비율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각각 27.3%, 24.2%로 가장 높았다. 또한 남편부모와는 54.1%가, 부인부모와는 60.6%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전화, 편지, 이메일 등에 의한 비대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합한 비율). 일년에 서너번 이하의 비대면 접촉을 하고 있는 비율이 남편부모와는 5.8%, 부인부모와는 5.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많은 기혼가구가 비동거부모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이메일 등에 의한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비동거부모와의 접촉은 만남보다는 비대면 접촉이 많았으며, 부인부모와의 접촉은 남편부모보다 미미하게나마 많았다.

2) 비동거부모와의 금전적 지원

비동거부모와의 금전적 지원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으로 하였고,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정기적 지원

표 1.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 한달에 두번 정도, ⑤ 한달에 한번 정도, ⑥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 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 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 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만남	남편부모	4.4	5.0	11.4	18.2	20.0	20.6	13.4	5.5	1.5	100.0(5,566)
	부인부모	5.6	4.9	9.5	15.0	17.8	19.6	15.1	9.5	2.9	100.0(6,646)
비대면 접촉	남편부모	8.5	18.3	27.3	19.5	15.5	5.0	2.2	1.7	1.9	100.0(5,565)
	부인부모	15.6	20.8	24.2	16.4	13.8	4.0	2.1	1.5	1.6	100.0(6,6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은 월평균 지원하는 금액을, 비정기적 지원은 연평균 지원금액으로 분석하였다.

(1) 정기적 금전 지원

비동거부모와 정기적인 금전교류는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즉, 남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는 30.9%이었으나, 남편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0.7%에 불과하였고, 부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는 20.2%이었으나, 부인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0.7%에 불과하였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가부모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은 경우는 0.7%로 동일하였으나, 부인부모 보다 남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정기적으로 금전교류를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금액은 월평균 8.2만원으로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금액인 월평균 4.5만원보다 현저히 많았다. 또한 남편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은 월평균 0.5만원, 부인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은 월평균 0.3만원에 불과하였다.

비동거부모와의 정기적 금전교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양가부모에게 정기적 금전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부인부모보다는 남편부모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혼자녀→부모’로의 금전이전이 많으며, 남편부모만큼은 아니지만 부인부모에게도 정기적 금전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적 금전지원의 금액은 부모 생활비의 전적 지원이 아니라 용돈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기혼자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2) 비정기적 금전 지원

비동거부모와 비정기적인 금전교류는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우가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경우보다 크게 많았다. 즉, 남편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는 89.5%이었으며, 남편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19.8%이었고, 부인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는 85.0%이었으며, 부인

표 2.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부모와의 정기적 금전 교류

(단위: 명, %, 만원)

구분	남편부모			부인부모		
	(분석대상)	제공률(수혜율)	월평균 ¹⁾	(분석대상)	제공률(수혜율)	월평균 ²⁾
양가 부모에게 제공	(5,536)	30.9	8.2	(6,614)	20.2	4.5
양가 부모로부터 수혜	(5,547)	0.7	0.5	(6,627)	0.7	0.3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하거나 남편부모로부터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하거나 부인부모로부터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18.8%이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동거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한 경우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가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비동거부모로부터 제공받은 비율도 유사하였다.

비정기적으로 금전교류를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금액은 72.3만원으로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금액인 58.4만원보다 다소 많았다. 또한 남편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은 43.1만원으로 부인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인 31.0만원보다 다소 많았다.

비동거부모와의 정기적 금전교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수의 기혼자녀 가구는 양가 부모에게 비정기적 금전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부인부모보다 남편부모에게 비중을 다소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기적 금전지원은 한국사회의 두 명절(설날과 추석), 5월 가정의 달, 부모님 생일 등에 기혼자녀의 '소박한' 선물과 부모님의 손자녀에 대한 '소박한' 선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비동거부모와의 물질적 지원

비동거부모와의 물질적 교류는 기혼자녀가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경우와 비동거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물질적 지원의 유형은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물질적 지원은 외식 및 음식물 접대가 남편부모(85.7%)와 부인부모(84.4%) 모두에게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가부모 모두에게 생활용품(남편부모 36.9%, 부인부모 36.2%), 건강용품(남편부모 37.1%, 부인부모 3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물질적 지원에서의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비동거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물질적 지원의 비율은 기혼자녀가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율보다는 낮았으나,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많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외식 및 음식물 제공으로 남편부모의 56.4%, 부인부모의 59.7%이었다. 다음은 생활

표 3.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부모와의 비정기적 금전 교류

(단위: 명, %, 만원)

구분	남편부모			부인부모		
	(분석대상)	제공률(수혜율)	월평균 ¹⁾	(분석대상)	제공률(수혜율)	월평균 ²⁾
양가 부모에게 제공	(7,702)	89.5	72.3	(6,617)	85.0	58.4
양가 부모로부터 수혜	(5,545)	19.8	43.1	(6,623)	18.8	31.9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하거나 남편부모로부터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하거나 부인부모로부터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표 4.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지원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남편부모에게 제공	(5,561)	15.3	37.1	36.9	13.7	85.7	1.2
부인부모에게 제공	(6,641)	13.9	34.4	36.2	10.7	84.4	1.2

주: 분석대상은 물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표 5.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부모로부터 수혜한 물질적 지원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남편부모로부터 수혜	(5,561)	1.2	5.0	10.8	2.7	56.4	0.4
부인부모로부터 수혜	(6,641)	1.5	6.7	13.9	2.5	59.7	0.3

주: 분석대상은 물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용품(남편부모 10.8%, 부인부모 13.9%), 건강용품(남편부모 5.0%, 부인부모 6.7%)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비동거부모로부터의 물질적 지원에서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의 차이는 매우 근소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동거부모와의 물질적 교류는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부모로부터 수혜받는 비율도 낮지는 않았다. 또한 물질적 지원은 남편부모와 부인부모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도 특징이다.

4) 비동거부모와의 서비스 지원

비동거부모와의 서비스 교류는 기혼자녀가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경우와 비동거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지원한 서비스의 유형은 제공의 방향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기혼자녀가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간병, 집안일, 기타이고, 비동거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자녀돌봄, 집안일, 기타 등이다.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집안일이 남편부모(부 39.2%, 모 44.3%)와 부인부모(부 31.9%, 모 37.9%) 모두에게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병서비스이었다(남편의 부 11.6%, 남편의 모 14.6%; 부인의 부 8.3%, 부인의 모 14.0%). 따라서 부모님이 집안일이 어렵거나 편찮을 경우에 비동거자녀가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딸, 아들 구분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부모님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표 6.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부(父)에게 제공률				모(母)에게 제공률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남편부모에게 제공	(3,213)	11.6	39.2	2.0	(5,267)	14.6	44.3	2.5
부인부모에게 제공	(3,838)	8.3	31.9	1.9	(6,336)	14.0	37.9	2.3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비동거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자녀돌봄이 남편부모(부 8.7%, 모 11.9%)와 부인부모(부 10.6%, 모 17.6%) 모두에게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집안일이었다(남편의 부 2.4%, 남편의 모 8.8%; 부인의 부 4.6%, 부인의 모 15.5%).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가 부모님 네분 중에서 부인의 모(母)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돌봄 17.6%, 집안일 15.5%이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자녀가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동거부모님도 기혼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서비스의 유형은 손자녀 돌봄이 가장 컸으며, 자녀의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었다. 특히, 부인 모(母)

의 서비스 제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정책적 함의

본 고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기혼자녀들은 부모가구와 떨어져 살지만 강한 가족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비금전 교류가 매우 강하였으며, 직접 만나서 교류를 하거나 우편을 통한 선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님댁 방문과 부모님이 기혼자녀 집을 방문할 때 흔히 나타나는 외식 및 음식물 대접이 많았고,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교류하고 있음에서 엿볼

표 7.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수혜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부(父)로부터 수혜율				모(母)로부터 수혜율			
	(분석대상)	자녀돌봄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자녀돌봄	집안일	기타
남편부모로부터 수혜	(3,213)	8.7	2.4	0.2	(5,263)	11.9	8.8	0.2
부인부모로부터 수혜	(3,838)	10.6	4.6	0.3	(6,336)	17.6	15.5	0.5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수 있다. 그렇지만 비동거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남이나 비대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어 ‘단절된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비동거부모와의 관계유지가 어려운 이유, 가족갈등 존재여부 및 갈등유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상담 등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사회는 ‘기혼 자녀→부모’로의 상향식 금전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부모세대의 조기퇴직과 노후 경제적 불안정(빈곤) 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조기퇴직의 차단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사회적 차원에서 강화하여 절대적 노인빈곤을 감소시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혼자녀가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은 정기적, 비정기적을 불문하고 생활비 지원 수준이 아닌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기혼자녀세대도 경제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노인소득보장을 지원하고, 노인빈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지원하는 금액에 대

한 세제혜택 등의 적극적 정책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빈곤에 대한 국가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녀의 노부모봉양’을 적극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정기적 금전 지원은 부인부모보다 남편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남편부모보다 부인부모에게서 제공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부모봉양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측면에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부인부모인 경향이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인부모에게도 정기적 금전지원이 다소 나타나고 있음은 점차 양성평등적 가족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고,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간병, 집안일,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가족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강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유인할 필요가 있다. 문헌